

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,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정(2022. 7. 5.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지속 가능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,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추진계획의 협의·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.
- ☐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송부하며, 시장은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 및 국가위원회에 제

출하고 지방보고서를 지체없이 국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또한 법률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·자문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를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이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, 경제·사회·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및 기후·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경주해야 할 시기입니다.

☐ 본 조례안이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,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☐ 감사합니다.